

제3조(업무내용)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예찰
 2.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3.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사검안
 4.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4조(위촉기간) ①공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교수는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수당)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도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공수의는 매월 2회 이상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일지(별표1)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별표 2의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이 조례 윤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공수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 12 】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의건

제출년월일 : 1993. 11. 6

제 출 자 : 양주군수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의거 행정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권, 행정권, 문화권, 광역행정 수요등을 감안하여 가평군을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구성권역에 포함시키고자 함.

주요골자

1. 협의회의 구성을 양주군외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미금시, 남양주군, 포천군, (4개시 3개군)에서 가평군을 추가 가입 (안 제3조)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

제1조 (명칭) 이 행정협의회는 의정부권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협의회는 의정부시에 둔다.

제3조 (구성) 협의회의 구성은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미금시, 양주군, 남양주군, 포천군, 가평군으로 한다.

제4조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의정부시장으로 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의정부시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시장, 부군수가 대리위원으로 참석하여 토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회의참석)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시.군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제6조 (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 협의회시 사전 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월부터 3월 사이와 8월부터 9월 사이에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화를 위하여 개최지를 제3조의 시.군 순서에 의거 윤번제로 실시할 수 있다.

⑤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개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처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의정부시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각 위원이 지정하는 기획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제9조 (회의록의 작성) ① 협의회의 회의록은 간사의 책임아래 기록.보관한다.

② 회의록은 다음 회기에 보고하고 위원의 서명으로 받아야 한다.

제10조 (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되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협의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

2.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3. 도로의 신설 및 개수. 보수

4. 버스 노선의 신설.변경 및 폐지

5.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6.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7. 자원의 개발.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협의사항의 조정) 회장은 2회이상 협의회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조정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담당관 (기획감사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은 의정부시 기획담당관이 되며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실무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경비부담) 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위원이 동일 비율로 부담한다.

② 공동 사무의 처리, 공동 개발사업 실시에 따르는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4조 (회계) ① 협의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정리한다.

② 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 회의때마다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5조 (결정사항의 처리)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 (보칙) 기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1981년 4월 10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규약은 1988년 11월 16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규약은 1992년 11월 1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13 】 휴회의건

제의년월일 : 1993. 11. 6

제 의 자 : 의 장

주 문

1993년도 행정사무감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함.

제안이유

감사특위 운영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 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함.

【 14 】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제출년월일 : 1993. 11. 12

제 출 자 : 행감특위원장

제안이유